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5403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540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8. 23 선고 2002나22887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9. 26 선고 2000나1558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1 선고 99가합72038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소송수행자 김종길외 4인)

【피고,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AA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전BA)

【환송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8. 23. 선고 2002나22887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상고인의 부담, 부대상고비용을 부대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 ·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CA주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7,269,319,800원에 수급하면서 피고로부터 961,431,984원의 계약금보증서, 5,025,580,200원의 차액금보증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소외회사가 그 공사를 진행도중 96%의 공정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그 수급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계약위반의 제재이며 계약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위약벌인 그 차액보증금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겁고 공서양속에 반하여 1,500,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그 차액보증금이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급가액과 기성가액, 이미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의 가액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1,500,000,000원을 넘는 부분의 그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판단에는 차액보증금의 성격과 위약벌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또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차액보증금인 위약벌이 위의 범위에서만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며 그 판단에는 그 위약벌의 무효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 부대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손지열